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1가단5140671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1. 9. 16.

판 결 선 고 2021. 9. 30.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3,361,3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31.부터 2019. 11. 2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21. 8. 24.까지는 연 7.0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86,4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1항 기재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김상훈

별지